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수 산 부 산 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수산부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 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던 것을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처리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부산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,

수산부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수산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수산부산물 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00. 00. 00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처리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(수산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수산물처리업자의 준 수사항 등) 법 제9조제1항에 따 라 수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수산물처리 업자”라 한다)는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	제9조(수산물처리업자의 준 수사항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수산물 처리 시 환경오 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	3. ----- ----- ---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중간처리 과정에서 「화 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 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을 것 <단서 신 설>	나. 중간처리 과정에서 「화 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 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하지 않을 것. <u>다만, 법 제3 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 물의 재활용 유형 중 해양 수산물령으로 정하는 재활 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처리하는 경우로 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</u>

4. (생략)	<u>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 4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

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1.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물부산물 수집·운반업: 다음 각 목의 <u>시설·장비</u>를 모두 갖추는 것 가. 보관시설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일 것 <단서 신설> 1)·2)·3)·4) (생략) 나. (생략)	1.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물부산물 수집·운반업: 다음 각 목의 <u>시설(수산물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·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가. 보관시설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일 것 1)·2)·3)·4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